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020년 제14차 전문위원회 서면심의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2020.12.16.(수)~12.18(금)		진행방법	서면심의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전담직원 정아영														
참석자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근형,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8명 참석 >																	
안 건	◆ 제1안 :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심의(안) ◆ 제2안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및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심의(안) ◆ 제4안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심의(안)																	
회의내용	◆ 제1안건-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심의(안) : 23건 (중복 포함)																	
	<table><tr><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th>결과</th></tr><tr><th>대상</th><th>심의사항</th><th>종류</th><th>위기사유</th><th rowspan="2">원안 가결</th></tr><tr><td>23</td><td>연장 19 환수 1 SOS 3</td><td>생계 주거 의료</td><td>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tr></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23	연장 19 환수 1 SOS 3	생계 주거 의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23	연장 19 환수 1 SOS 3	생계 주거 의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table><tr><td>1) 예산집행율이 긴급복지지원사업 30%,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11%로 부족상황인데, 12월 말 기준하여 집행가능한 지, 만약 집행 불가하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윤희 위원장)</td></tr><tr><td>2) 1-10, 1-12 : 사례관리, 정신건강센터 연계 등 확인 필요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확인 필요함. (김혜미 위원)</td></tr><tr><td>3) 1-12 :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필요한 가정으로 사료됨. (김혜미 위원)</td></tr><tr><td>4) 1-11 : 사례 정보가 맞는지? 증권회사 과장 44세 퇴직인데 재산/금융재산이 이 정도가 맞는지? (김혜미 위원)</td></tr><tr><td>5) 1-21 : 소득중단 이해되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작년부터 상황이 안 좋운데 굳이 송도5동 거주 이유가 있는지? 상황 면밀히 파악 필요함. (김혜미 위원)</td></tr><tr><td>6) 근로 능력이 가능한 경우에 자활사업 참여 적극 권고 필요함. (최성남 위원)</td></tr></table>				1) 예산집행율이 긴급복지지원사업 30%,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11%로 부족상황인데, 12월 말 기준하여 집행가능한 지, 만약 집행 불가하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윤희 위원장)	2) 1-10, 1-12 : 사례관리, 정신건강센터 연계 등 확인 필요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확인 필요함. (김혜미 위원)	3) 1-12 :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필요한 가정으로 사료됨. (김혜미 위원)	4) 1-11 : 사례 정보가 맞는지? 증권회사 과장 44세 퇴직인데 재산/금융재산이 이 정도가 맞는지? (김혜미 위원)	5) 1-21 : 소득중단 이해되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작년부터 상황이 안 좋운데 굳이 송도5동 거주 이유가 있는지? 상황 면밀히 파악 필요함. (김혜미 위원)	6) 근로 능력이 가능한 경우에 자활사업 참여 적극 권고 필요함. (최성남 위원)								
1) 예산집행율이 긴급복지지원사업 30%,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11%로 부족상황인데, 12월 말 기준하여 집행가능한 지, 만약 집행 불가하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윤희 위원장)																		
2) 1-10, 1-12 : 사례관리, 정신건강센터 연계 등 확인 필요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확인 필요함. (김혜미 위원)																		
3) 1-12 :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필요한 가정으로 사료됨. (김혜미 위원)																		
4) 1-11 : 사례 정보가 맞는지? 증권회사 과장 44세 퇴직인데 재산/금융재산이 이 정도가 맞는지? (김혜미 위원)																		
5) 1-21 : 소득중단 이해되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작년부터 상황이 안 좋운데 굳이 송도5동 거주 이유가 있는지? 상황 면밀히 파악 필요함. (김혜미 위원)																		
6) 근로 능력이 가능한 경우에 자활사업 참여 적극 권고 필요함. (최성남 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

- 1) 2020년 말까지 긴급복지사업은 약 80%, SOS복지안전벨트는 전액 집행 예정. 긴급복지사업 잔액 발생 이유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추경에 반영된 올해 예산이 약 24억으로 작년예산 11억 대비 2배 이상 과도하게 증액되었으며, 각 부서마다 코로나19대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동일한 내용의 지원으로 인하여 예측보다 긴급지원 대상자 감소함.
- 2) 1-10 : 해당 가구는 긴급지원 연장지원 중인 세대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동행하여 가정방문 상담 진행함. 추후 대상자 동의를 얻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예정임.
- 3) 1-12 : 해당 가구는 20.11.11.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며, 모녀가 부와 거주지가 분리 되며 위기상황이 해소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필요시, 정신건강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 예정에 있음.
- 4) 1-12 : 가정폭력당사자인 부가 주소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놓은 상황이며, '접근금지명령'은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장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
- 5) 1-11 : 해당 가구의 세대주는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 중으로 증권회사 근무 당시 월 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300만원 이상이 개인회생 상환비, 기타 카드 대출 등으로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채상환에 사용함. 퇴직금은 대출 상환을 위해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 당시 300만원 지급받음. 예금이 거의 없어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파산 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어려워져 재기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희망일자리, 차상위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며 개인회생을 유지하고 있음.
- 6) 1-21 : 해당 가구는 미혼 1인 가구로 만수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는 전세임차(보증금 1억) 후, 1억 1천만원 전세대출을 받아 송도에 전세 임대(보증금 2억4천)하여 거주 중임. 과외수입으로 대출 상환 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했으나, 갑작스런 소득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사는 집과 본인 명의 집 모두 전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이사비용 등이 부담되어 계속 거주 중이라고 함.
- 7) 참고하여 근로 능력이 있으나,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음.

◆ 제2안전-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2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2	20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및 사실상 이혼 인정	

◆ 제3안건-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및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심의(안): 3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3	3	• 가족관계 해체 • 재산의 소득환산대상 제외 • 보장비용 징수 제외	

◆ 제4안건-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1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한 징수권 미행사 소멸시효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1) 1안의 경우, 보장비용징수를 누락시킨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진하 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	1) 2009.11월~2011.11월까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결정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징수결정, 납부통지 및 독촉 등 처리하였으나, 2011.12월 이후부터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담당자 인수인계시 자료 누락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차기회의

◆ 2021년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4시,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진행

◆ 2021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 장소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COVID-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 변경 가능)